

의안번호	제 40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4월 13일

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4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4월 1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운용계획				2020년도말 조성액
		당초		변경		
		수입	지출	수입	지출	
계	48,743	4,307	2,777	4,293	3,798	49,238
투자진흥기금	10,008	189	0	175	0	10,183
환경보전기금	38,735	4,118	2,777	4,118	3,798	39,055

3. 의안전문 : 첨부 (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